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베스트 요양원



베스트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표준약관
제10068
호

베스트요양원의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 계약 목적 】

1.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이하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이용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4. 계약체결 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 2조 【 계약기간 】

1. 계약 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 여부 확인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3.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4. 제1호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경 또는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재계약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5. 관계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 우편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 입소물품 】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으며, 시설의 특성 상 훼손 및 분실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가의 물건 및 현금 등 반입하지 않는다.

제 4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1. 입소 이용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로 한다.)
단, 기초수급권자는 국비, 지방보조금으로 대체함으로 일체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2. 보호자(또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과 비 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납부방법은 요양원의 예금계좌 또는 카드 결제로 한다.
4. 보호자(또는 수급자)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보호자(또는 수급자)가 별도 부담한다.
5. 수급자는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한다.

제 5조 【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1. 입소자가 부담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3.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별지1호]

◇ 시설급여 (1일)

구		본	1 등급	2 등급	3,4,5 등급	외 박 시
요양	노인요양시설		90,450	83,910	79,240	본인부담금의 50% 산정 (최대 15일간)
비급여	상급침실이용료 (1일)		1인실 (30,000원) 2인실 (20,000원)		상 세 산 정 방 법	당일 잠시라도 거주 시 납부
	이/미용료등		-			단체 이/미용 외에 개인적으로 파마 및 염색 요구 시 별도 비용 발생
	식재료비 (1식)		4,100원			외박 시 납부 X
	간식비 (2회)		2,000원			외출 시 납부 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 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12%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 - 장기요양인정 시 등급적용

구 분		1일	28일	30일	31일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	1등급	90,450	☐ 506,520	☐ 542,700	☐ 560,790	☐ 전액무료
			☐ 303,912	☐ 325,620	☐ 336,474	
			☐ 202,608	☐ 217,080	☐ 224,316	
	2등급	83,910	☐ 469,896	☐ 503,460	☐ 520,242	☐ 전액무료
			☐ 281,938	☐ 302,076	☐ 312,145	
			☐ 187,958	☐ 201,384	☐ 208,097	
	3,4,5등급	79,240	☐ 443,744	☐ 475,440	☐ 491,288	☐ 전액무료
			☐ 266,246	☐ 285,264	☐ 294,773	
			☐ 177,498	☐ 190,176	☐ 196,515	
비 급 여	식 재 료 비	12,300	☐ 400,400	☐ 429,000	☐ 443,300	☐ 고양시청 보조금 지원
	간 식 비	2,000				
월 입 소 비 용	1등급	일반(20%)	☐ 906,920	☐ 971,700	☐ 1,004,090	☐ 전액무료
		감경(12%)	☐ 704,312	☐ 754,620	☐ 779,774	
		감경(8%)	☐ 603,008	☐ 646,080	☐ 667,616	
	2등급	일반(20%)	☐ 870,296	☐ 932,460	☐ 963,542	☐ 전액무료
		감경(12%)	☐ 682,338	☐ 731,076	☐ 755,445	
		감경(8%)	☐ 588,358	☐ 630,384	☐ 651,397	
	3,4,5등급	일반(20%)	☐ 844,144	☐ 904,440	☐ 934,588	☐ 전액무료
		감경(12%)	☐ 666,646	☐ 714,264	☐ 738,073	
		감경(8%)	☐ 577,898	☐ 619,176	☐ 639,815	
등 급 외 자		79,240	☐ 2,218,720	☐ 2,377,200	☐ 2,456,440	식재료·간식비 제외 좌동일
추 가 비 용		상급침실료	1인실	30,000(1일)	2인실	20,000(1일)
		장기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월 2회)				

< (안내) 비 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 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 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景观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 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 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 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청구 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3. 추가비용에 관한 기준

계약의사와의 진료비는 병원에 따른 것으로 요양시설의 수급자 전체가 월 2회의 본인부담금이 발생

제 6조 【 계약자 의무 및 권리 】

‘수급자’과 ‘요양원’ 그리고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 및 권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①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요양원’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관리 협조
2. ‘수급자’의 신변이상을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당,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④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 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제 7조 【 계약의 해제 】

1. 이용자가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라.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8조 【 퇴소 】

- ① ‘요양원’은 ‘수급자’가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수급자’가 지정한(또는 ‘신원인수인’)계좌로 7일 이내로 지급한다.
- ② 퇴소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원’에게 제출하고 ‘수급자’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퇴소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신원인수인’ 또는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2025 년 도 본 인 부 담 금 안 내 ♥

일수	본인부담금	1등급	2등급	3·4·5등급 (시설급여)	등급외자
31일	일반(20%)	1,004,090	963,540	934,590	2,456,440
	감경(12%)	779,770	755,450	738,070	
	감경(08%)	667,620	651,400	639,820	
30일	일반(20%)	971,700	932,460	904,440	2,377,200
	감경(12%)	754,620	731,080	714,260	
	감경(08%)	646,080	630,380	619,180	
01일	일반(20%)	32,390	31,080	30,150	79,240

상세 내용 안내					
식재료비	1식	4,100	간식비	2회	2,000
	3식	12,300			

추가 비용 안내						
상급 침실 비용	1인실	(1일)	30,000	2인실	(1일)	20,000
계약의사 본인부담금 (1회)	초진	일반(20%)	3,682	재진	일반(20%)	2,632
		감경(12%)	2,209		감경(12%)	1,579
		감경(08%)	1,472		감경(08%)	1,052

* 상세 산정 내용 안내 *	
외박 시	본인부담금의 50% 산정 (연속 10일간 / 월 최대 15일간)
상급 침실 이용료	당일 잠시라도 거주 시 납부 / 입원, 외박, 외출시에도 납부
식재료비 간식비	외출 시 납부 함, 외박 시 납부 안함

♥ 본인부담금 & 계약의사 비용 입금계좌 ♥

국민은행 (베스트요양원)	231401 - 04 - 360468
---------------	----------------------

♥ 약제비 & 가정간호 & 개별간식 & 기타 입금계좌 ♥

국민은행 (박혜준)	373302 - 01 - 100401
------------	----------------------



베스트 요양원